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성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089 발의연월일: 2024. 9. 19.

발 의 자: 박성민·김위상·강민국

박덕흠 • 구자근 • 김기현

김상욱 · 서범수 · 이상휘

김정재 · 서일준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지하자원을 채광(採鑛)하는 자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음.

그러나 그 성질이 유사한 해저광물자원 채취(採取)는 어로제한 등 주변지역의 개발을 제한하고 있으므로, 해저광물자원을 채취하는 자에 대하여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해저광물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면서 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규정하려는 것임(안 제34조제1항제10호라목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박성민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4088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제1항제10호라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아목까지로 하고,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라. 해저광물자원: 해저광물자원을 채취(採取)하는 때

부 칙

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34조(납세의무의 성립시기) ①	제34조(납세의무의 성립시기) ①		
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			
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			
성립한다.			
1. ~ 9. (생 략)	1. ~ 9. (현행과 같음)		
10. 지역자원시설세	10		
가. ~ 다. (생 략)	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		
<u><신 설></u>	라. 해저광물자원: 해저광물		
	자원을 채취(採取)하는 때		
<u>라.</u> ~ <u>사.</u> (생 략)	<u>마.</u> ~ <u>아.</u> (현행 라목부터		
	사목까지와 같음)		
11.・12. (생 략)	11.・12. (현행과 같음)		
②・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		